

## 국적취득 신고서

※ 어두운 난은 적지 마시고 [ 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시를 합니다.

(앞쪽)

접수번호	접수일	접수자	확인자	처리기간	6개월
신 고 인	국적	출생지(국가 및 도시명)			사 진 3.5cm×4.5cm (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 촬영한 것)
	성명(한글) (한자)	성별 [ ] 남 [ ] 여			
	성명(외국명)	생년월일			
	전화번호(휴대폰)	전화번호(주택)			
	전자우편(E-mail)				
	주소				
예정 등록기준지					

	관계	성명	나이	국적	주소
가 족					

신고사유	[ ]인지에 의한 국적 취득(「국적법 시행령」 제2조) (인지일 : . . .)
	[ ]재취득(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5조) (외국 국적 포기일 : . . .)

「국적법 시행령」 제2조 또는 제15조에 따라 신고합니다.

년 월 일

신고인  
(법정대리인)

(서명 또는 인)

법무부장관 귀하

첨부서류	뒤쪽 참조	수수료 뒤쪽 참조
------	-------	--------------

첨부서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- 인지에 의한 국적취득 신고 (「국적법 시행령」 제2조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외국인임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2. 대한민국 국민인 아버지 또는 어머니에 의하여 인지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3. 출생 당시에 그 아버지 또는 어머니가 대한민국 국민이었음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4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</li></ol></li> <li>- 국적재취득 신고 (「국적법 시행령」 제15조)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1.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또는 대한민국 국적 취득사실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2. 외국 국적을 포기한 사실 및 연월일을 증명하는 서류</li><li>3. 「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」 제93조에 따른 국적취득 통보 및 가족관계등록부 작성 등에 필요한 서류로서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서류</li></ol></li></ul>	수수료  1인당 2만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-----

처리절차

